

2. 내역사업별 지원계획

1]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

가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
- (지원규모) 240개 과제 내외(일반 : 190개, 레전드 50+: 50개)

◇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: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핵심 정책수단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정책

* 레전드 50+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할당(제한경쟁)

- (지원내용)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% 지원

구 분	기준연봉*			정부지원연구개발비(정부지원금)**		
	1년차	2년차	3년차	1년차	2년차	3년차
학 사	3,200만원	3,500만원	3,800만원	1,600만원	1,750만원	1,900만원
석 사	4,100만원	4,500만원	4,900만원	2,050만원	2,250만원	2,450만원
박 사	5,000만원	5,500만원	6,000만원	2,500만원	2,750만원	3,000만원

* 기준연봉(세전금액) :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 (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) ② 산출식 : (기본급+월정액수당(퇴직금 제외))×12개월

*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

○ 지원대상

- (지원기업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*
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

- (연구인력) 학·석·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

- 2020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5년 2월 학위 취득예정자까지 신청 가능
- 연령제한 : 생년월일이 1985년 2월 1일 이후인 자(1985년 2월 1일 포함)

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

○ 지원조건

- 채용(예정)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, 다음의 범위에 해당

- (채용 연구인력)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(고용보험 가입일자 '24.1.31~'25.1.30 해당)
 - (채용예정 연구인력)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,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('25.6.1)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(고용보험 가입일자 '25.1.31~'25.6.1 해당)
- * 채용예정인 경우 연구인력이 특정되어야 하며, 해당인력은 신청 전 SMTECH 회원가입을 완료해야함

나. 신청 및 접수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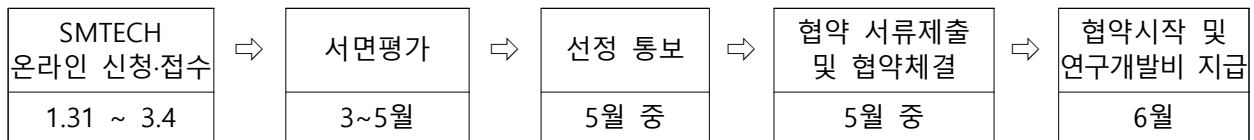
○ (신청·접수기간) '25. 1. 31(금) ~ '25. 3. 4(화) 18:00까지

* 접수마감 시간(18:00)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이 절대 불가(유예시간 없음)하니, 가급적 마감일 1~2일 전까지 신청 바람

○ (신청방법)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·접수

- ☞ www.smtech.go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- *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'사업별 FAQ' 및 '접수매뉴얼' 확인
- ☞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R&D 사업공고 →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

○ (선정절차) ① 신청·접수 → ② 평가 → ③ 협약 → ④ 연구개발비 지급



*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다.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

○ 우대사항

구분	내용	우선할당
중소기업	첨단기술분야(국가전략기술, 신성장원천기술, 국가첨단전략산업)에 해당시 (☞[참고1] 첨단기술분야 항목별 리스트)	신규과제 선정 시 60% 이상
	비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연어형 인재 및 일반 인재 채용(예정) 시 * 연어형 인재 : 수도권·해외의 대학, 기업, 연구기관 등에서 이력(학력, 경력)을 보유한 자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(예정)한 연구인력	신규과제 선정 시 50% 이상
	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사업에서 R&D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 중에 연구인력혁신센터(4개)에서 추천한 기업	신규과제 선정 시 우선 지원

○ 가점 항목

분야	우대사항	가점	확인방법 (증빙서류)	비고
공통가점 (성과창출 강화)	최근 3년 이내(2022.3.5.~2025.3.4.)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	1점	최종평가확인서 등	최대 우대 가점 외 별도 적용
	최근 3년 이내(2022.3.5.~2025.3.4.)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또는 중소기업 R&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	2점	표창장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R&D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	
	최근 3년 이내(2022.3.5.~2025.3.4.)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 완료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조기 완납한 기업 * 조기완납 기준: 기술료 납부 1~3차년도 납부기한까지 기술료 상한금액을 완납한 경우 ** 단, 기술료 상한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	1점	조기완납기업 확인서 등	
공통가점 (생태계 보완)	신청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	1점	「여성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	최대 5점
	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	1점	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(장애인등록증 확인 필)	
	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	1점	기술개발 수행 사업장(본사 또는 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)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(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('25.3.4)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)	
	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*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	1점	기술개발 수행 사업장(본사 또는 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)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(사업자등록증 및 접수마감일('25.3.4)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DB로 확인)	
	최근 3년 이내(2022.3.5.~2025.3.4.)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* 임치 시작과 종료일이 해당기간(2022.3.5.~2025.3.4.) 안에 포함되면 가점인정	1점	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증	
사업별 가점	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력 * 접수마감일('25.3.4) 까지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 **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5년 만기)만 우대가점 해당(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해당)	5점	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	
	채용예정자 *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,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	3점	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	
	대한민국 일·생활균형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	3점	대한민국 일·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(사본)	
	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	3점	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※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서에 한함 ※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	
	위기징후 밀집지역(주의, 심각단계) 소재 기업	1점	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	

○ 감점항목

연번	감점 사항	감점	확인
①	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	10점	전문기관 확인
②	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 2.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	1점	

라. 평가방법 및 기준

- 기술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,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

* 평가항목 : 신청기업의 R&D수행역량(25점),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(30점), 연구인력의 R&D수행역량(25점), 지원의 효과성(20점)

마.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- 신청기업 대표자,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
-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신청불가

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,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, 舊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(신진,고경력), 舊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, 舊초·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,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(신진,고경력)

- 단,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*를 취득**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(신청 인력만 해당)

* (예) 학사 → 석사, 석사 → 박사 / **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(예정)자

-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,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
- 협약 시작일('25.6.1.) 기준,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(현금)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(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)

* 단, '지원인력 연봉 - 정부지원금/년'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(참여) 가능

- 신청 마감일 기준, 현재 군 복무 중인 자(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포함) 또는 군 복무 예정자
-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(단,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)

바. 유의사항

-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("25.6.1.)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
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("25.6.1)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

- 단, 외국인(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)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, 협약체결일 전까지 고용보험가입 대신 산업재해보험 가입*으로 대체 가능

*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, 정규직 채용 계약서를 통해 고용여부를 확인

< [참고] 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의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 >

외국인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가능 비자

: 연구(E-3), 특정활동(E-7-1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 등

※ 비자 변경 시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, 협약("25.6.1)전까지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로의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

-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(지원 연구인력) 변경불가*

* 단, 지원 연구인력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 허용

-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,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(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)

-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기관, 기업, 인력, 대표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
-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'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운영요령' 및 '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', '신진·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'을 적용함

사. 기타

- 본 사업은 R&D 졸업제를 적용받지 않음(졸업제 미적용 사업)
- 중소기업이 신진·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

<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>

사업명	기 지원 과제 횟수(23년~)	신규 신청 가능 여부
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,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	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	신청 불가
	신진 1회 + 고경력 1회	신청 불가
	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	신청 가능

*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'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/ ** 중도 포기 과제도 지원 과제로 간주

- (보안등급 분류)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
 -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 - 보안과제는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
 -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,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(보안과제 ↔ 일반과제)
 -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1조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44조부터 제48조,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보안대책」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
- * 신청과제의 보안등급(보안과제/일반과제)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
- ※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[참고2]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참고

아. 신청서류

연번	서 식 명	제출서류		제출방법
		필수	해당시	
①	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*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, 개발기간 시작일은 '25. 6 1'로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 ** (요약문, 본문2)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*** (본문1) 불입서식을 활용하여 작성(항목별 페이지 수 제한 준수)	요약문 본문2	○	시스템 직접 입력 www.smtch.go.kr에 서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, 파일 업로드
		본문1	○	
		첨단 기술분야 확인서	○	
②	첨단기술분야 확인서 * 기업의 사업추진 및 연구분야가 첨단기술분야에 해당할 경우, (첨단기술분야 확인서) 불입서식을 활용하여 작성	첨단 기술분야 확인서	○	
③	신청기업의 '22, '23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설립 3년 미만기업(사업접수 마감일 기준)은 미제출 가능 * 국세청 발급분만 인정, 세무사가 날인한 결산자료는 인정불가 - '22, '23년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국세청 발급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, 해당점수(매출액 대비 R&D 투자액, 5점 만점) 0점 처리		○	
④	신청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(지점사업자로 신청 불가)		○	
⑤	신청인력의 학사·석사·박사 학위증명서(최종학위) * 학위 수료증 제출은 불인정(졸업증만 가능) * 해외학위 경우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를 함께 첨부, 복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- 번역공증 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미제출 시, 학위증명서 불인정 - 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		○	
⑥	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(근로자용)(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) * 사업장 발급용이 아니며, 신청인력(근로자용)이 직접 발급해야 함 * 신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나오도록 전체발급(선택발급 불가) * 고용(건강)보험 이외의 서류는 불인정 - 단, 외국인의 경우 산업재해보험 가입이력으로 대체 가능		○	
⑦	차별성 검토 보고서 * NTIS(www.ntis.go.kr) 회원가입 후 차별성검토 시행(유사도 60%로 설정) 하여 검색 결과중(PDF파일 다운)을 제출 (상세내용은 FAQ 참고)		○	
⑧	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빙자료 * 연구개발계획서(본문1) 1. 신청기업 역량 2) 기업의 산업재산권 및 기술 인증 보유현황 기재 시 증빙자료(출원증, 등록증 기술인증서 등) 제출 * 본문에 기재된 순서대로 파일 병합하여 제출, 미제출시 정량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		○	
⑨	신청인력의 병적증명서		○	스캔본 업로드
⑩	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참여기업 선정확인서		○ (레전드기업만 해당)	
⑪	우대가점 총빙서류	중기부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최종평가확인서	○	
		중기부 장관 표창장	○	
		중소기업 R&D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 확인서	○	
		조기완납기업 확인서	○	
		여성기업확인서	○	
		장애인등록증 확인필	○	
		기술자료임치증	○	
		신청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*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증서 제출	○	
		신청(채용예정)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-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(고용산재보험 토달서비스 홈페이지) * '25. 1. 31 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만 인정 * 해당서류 이외에는 인정불가	○	
		대한민국 일생활·균형 우수기업 선정서(사본)	○	
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	○			
소재 지역 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확인서	○			
⑫	신용상태 조회·정보활용 동의서		○	
⑬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	○	
⑭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○	

* 필수 제출 서류 중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,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
관계없이 지원 제외(결격) 처리